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상훈 · 정동만
김위상 · 김성원 · 엄태영
이양수 · 조정태 · 구자근
최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”라는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본문 중 “산입하지”를 “포함하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규제개선 신청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<u>산입하지</u>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,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	제15조(규제개선 신청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하지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